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44

제출년월일 : 2006. 9.
발 의 자 : 채명지의원 외 1인

1. 제안이유

공무원여비규정 개정(2006. 1. 12)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달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범위 내에서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의 지급단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계산방법을 명확히 함.
(안 제2조 제2항, 안 제3조 제2항)

나. 【별표 3】 국내여비지급기준표의 일비를 20,000원으로 조정
(안 제4조 제1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32조
같은법 시행령 제15조

나. 예산조치 : -

다. 개정조례안 : 별첨

라. 신구조문 대조표 : 별첨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의원의 직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월의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.

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의원의 직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월의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.

【별표 3】 국내여비지급기준표 중 일비 란의 금액 "10,000" 을 "20,000" 으로 하고, 비고 2호의 "새마을호 특실" 을 "특실 정액"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의정활동비) ①(생략)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	제2조(의정활동비) ①(현행과 같음)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의원의 직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월의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.
제3조(월정수당) ①(생략)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	제3조(월정수당) ①(현행과 같음)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의원의 직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월의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.

【별표 3】

국내여비지급기준표(제4조제1항 관련)

(단위:원)

현 행								개 정 안							
구분	철도운임	선박운임	항공운임	자동차운임	**일비(1일당)**	숙박비(1야당)	식비(1일당)	-	-	-	-	-	**일비(1일당)**	-	-
의원	1등급	2등정액	정액	정액	**10,000**	46,000	25,000						**20,000**		
※비고 1. (생략) 2. 철도운임 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,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. 3. (생략)								※비고 1. (현행과 같음) 2. .....특실 정액 .... 3. (현행과 같음)							

관 계 법 령

[지방자치법]

第32條 (議員의 議政活動費등) ①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各號의 費用을 지급한다. <개정 1999.8.31, 2003.7.18, 2005.8.4>

1. 議政資料의 蒐集·硏究와 이를 위한 補助活動에 소요되는 費用을 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議政活動費
2.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議決이나 議長의 명에 의하여 公務로 旅行할 때 지급하는 旅費
3.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

②第1項 各號에 規定된 費用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. <개정 2005.8.4>

③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05.8.4> [全文改正 1994.3.16]

[지방자치법시행령]

제15조 (의정활동비·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) ①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·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.

1. 의정활동비 : 별표 5에 의한 금액
2. 여비 : 별표 7 및 별표 8에 의한 금액
3. 월정수당 :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,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,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.[전문개정 2006.2.8]

【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
- 채명지 의원 외 1인 발의 -

서 명 날 인 서

의 원 명	서 명	날 인
채 명 지	채명지	
방 종 영	방종영	